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8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엄태영 · 김용태
송석준 · 김승수 · 김태호
김태규 · 안철수 · 윤영석
최은석 · 이소희 · 강명구
이만희 · 권영진 · 윤용근
서명옥 · 이진숙 · 김기웅
임종득 · 배준영 · 구자근
이학영 · 황운하 · 송언석
김예지 · 조정태 · 최보운
배현진 · 윤재옥 · 김소희
박대출 의원(3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아동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현행 「아동복지법」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·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「아동기본법」으로 일원화하고,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「아동복지법」상 아동정책기본계획, 아동정책조정위원회, 국가아동권리보장원,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「아동기본법」으로 이관하고,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「아동기본법」의 지역계획

· 아동지원정보 · 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(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, 제12조제1항제1호,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 · 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아동기본법안」(의안번호 제214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부터 제10조까지·제10조의2·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”을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지역계획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0항 중 “보장원”을 “「아동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보장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중 “정보의”를 “정보, 「아동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아동지원 정보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 관련 자료·정보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정보로서”를 “정보(「아동기본법」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)로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“업무 수행”을 “업무 및 「아동기본법」에 따른 아동지원 업무 수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)</u> ①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② <u>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1. <u>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</u> 2. <u>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</u> 3. <u>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</u> 4. <u>재원조달방안</u> 5. <u>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 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 ④ <u>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</u>	<u><삭 제></u>

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

<삭 제>

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보건

<삭 제>

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

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아동정책조정위원회) ①

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3.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

<삭 제>

및 평가·조정에 관한 사항

5.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
간 협조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
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
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
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
된다.

1. 교육부장관·법무부장관·행
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
부장관·산업통상부장관·보
건복지부장관·고용노동부장
관·성평등가족부장관·기획
예산처장관

2.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
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
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
하는 15명 이내의 위원

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
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
의·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
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제3
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

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·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(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국가는 아동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보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

<삭 제>

무를 수행한다.

1.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
개발 및 정책 분석
2.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
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
지원
3.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
4.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
가 지원
5. 제15조, 제15조의2, 제15조의
3, 제16조, 제16조의2의 아동
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
6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
위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업
무
7.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
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
무
8.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
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
한 지원
9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
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
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
목의 업무

가.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

스에 관한 조사·연구

나.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

대한 교육 운영

다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

법」에 따른 입양정책위원

회 운영 지원

라.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

업무

마.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

바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

법」 및 「국제입양에 관

한 법률」에 따라 보건복

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

은 업무

사. 그 밖에 「국내입양에 관

한 특별법」 및 「국제입

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

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
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업무

10.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

축

11.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

12.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

및 사례분석

12의2.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
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
의 지원

13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
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
터 위탁받은 업무

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
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
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
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
여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보건복
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·운
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
있다.

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
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
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
한다.

⑦ 보장원은 「기부금품의 모
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
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
수 있다.

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 보

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, 언어 및 인지 발달, 정서적·신체적 건강, 아동안전,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
<삭 제>

정한다.

제11조의2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“아동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①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각각 둔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

<삭 제>

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① -

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

1.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~ 8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15조(보호조치) ① ~ ⑨ (생략)

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,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,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「아동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지역계획-----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보호조치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「아동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보장원”이라 한다)-----

⑪ (생 략)

제15조의2(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·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(이하 “아동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

-----.

⑪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-----
-----정
보, 「아동기본법」 제15조에
따른 아동지원 정보 및 같은 법
제22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
관련 자료·정보의-----

-----.

② -----

---정보(「아동기본법」 제15
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 대상
아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)
로서-----

-----.

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1. ~ 13. (생 략) 1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아동복지 관련 <u>업무 수행</u>에 필요한 정보 ③ ~ ⑥ (생 략)	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----- -----<u>업무 및 「아 동기본법」에 따른 아동지원 업무 수행</u>---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